

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
리겠습니다.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되었으
나 최근 소비 트렌드의 급변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
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
경영상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.
- 특히, 대형마트는 그 동안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제고와 지역의 고
용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나, 영업 부진으로 폐업이 이어지면서 지
역상권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개최한 ‘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’(2024.1.22.)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‘공휴일 중 지정 원칙’ 철폐와 영업시간 외의 온라인 배송 허용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.

□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제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고 있는 바, 서울시 조례에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는 지역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지원 정책을 추진도록 하고자 합니다.

□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,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친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전체에서 동일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권고(제12조제1항)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또한 12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1.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(온라인 배송 제외)

2. 월 2회의 의무휴업일(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함)

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,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
변화된 경제현실에 필요한 조치이니만큼 개정안의 취지를 살피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☐ 감사합니다.